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7호

2015 지적측량수수료 일부 수정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고시합니다.

2015. 1. 7.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15. 1. 1.

2. 2015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o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 종목별	기 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39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496,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379,000
경계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600,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750,000
	수치	1필지	300	517,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35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44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342,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600,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750,000
	수치	1필지	300	517,000